

2022년 13기
KOICA 프로젝트봉사단
모 집 안 내
- 탄자니아 기초(유아)교육 분야 -

2022. 10. 06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사)코익스(KOICS)

- 차 례 -

1. 모집 개요
2. 지원 자격
3.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안내
4. 선발 일정
5. 증빙서류 업로드
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 붙임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
 3.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
 4.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양식

2022년 [13차] KOICA 프로젝트봉사단(탄자니아 기초교육분야) 모집 안내

- ◆ 모집인원 : 총 15명
- ◆ 파견국 : 탄자니아
- ◆ 활동기관 : Dar Es Salaam주 교육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활동기간 : 1년*(희망하는 경우 활동 결과를 고려하여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 파견시기 : 2022년 12월경 예정
- ◆ 활동분야(주요 활동)

직종 분야	핵심 업무	주요 활동
유아교육	• 유아인지교육	• 유아 인지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신체활동교육	• 유아 신체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정서지원교육	• 유아 정서 지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교사교육	• 교육 활동별 유아교사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주양육자교육	• 주양육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지역협력활동	• 지역 사회 자원 발굴 활동 • 지역 사회 연계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현장 탐구 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원 환경구성	• 분기 또는 반기별 원 환경 구성 계획 및 환경 구성

◆ 파견 활동 시 지원사항

- ▶ 출국시 지원 : 출국준비금, 항공료, 여권, 예방접종 등
- ▶ 활동시 지원
 - 생활경비 : 현지생활비, 주거비
 - 활동경비 : 활동물품 및 현장사업 협력활동 등
 - 안전 및 건강관리 :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등
- ▶ 귀국시 지원 : 국내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택송료 등
- ▶ 커리어 지원 : 각종 수수료증(국내교육, 어학교육, 직무교육 등) 부여
 각종 활동 증명서 및 국내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부여
 코이카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5명
- 활동기간 : 1년 (희망하는 경우 활동결과를 고려하여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파견시기 : 2022년 12월 초~중순 (예정)
- 모집내용

파견 국가 및 기관	사업명	직종 (분야)	모집 인원	활동내용
탄자니아 교육부 산하 병설유치 원 5개원 (다르에스 살람 소재)	탄자니아 기초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교육 (유아교육)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인지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신체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정서 지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교육 활동별 유아교사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주양육자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지역 사회 자원 발굴 활동 • 지역 사회 연계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유아 현장 탐구 활동 교육 계획안 작성 및 교육 활동 • 분기 또는 반기별 원 환경 구성 계획 및 환경 구성

※ 단, 활동기관은 수원국 요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요건

□ 공통자격

-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가치’ 를 존중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코로나19 팬데믹 고려, **만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3차백신접종(부스터샷) 파견 2주전까지 완료 예정자**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해외봉사단 파견시 일반여권으로 파견 예정이며,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상제안내 예정

□ 분야별 자격 및 우대

지원국가	지원직종	자격요건	우대사항
탄자니아	교육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 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필수학점 이수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아동학 이수) 	<p>(유아교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 유아교육/ 보육/ 아동 관련 석박사 과정 중인 자 ○ 유아교육 관련 기관 경력자 <p>(개발협력 및 홍보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자격증 보유자 ○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또는 근무 경력자 ○ 홍보활동 유경험자 (블로그 또는 유튜브 운영, 그래픽 디자인 등)

3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지원방법

- 제출기한 : **2022. 10. 14 (금), 오후2시까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admin@kidc.or.kr) 제출

□ 선발절차

1) 1차 전형 (서류심사 / 구비서류 제출)

-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 여부 점검
- 인재풀(귀국단원) 단원의 경우, 기존의 지원서를 참고하여 제출 가능
- (서류 제출)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2차 전형 (기술 및 일반 면접 / 적합도 검사)

- (기술 면접) 지원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점검
- (일반 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기본소양 평가
- (적합도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적합도 검사(온라인 실시)

3) 3차 전형

- (신체검사/신용조회) 신체검사 및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현지파견이 불가할 수 있음

※ 교육 및 파견 관련 내용은 최종합격자에게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 (국내교육) 구비서류 검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국내교육 대상자(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이후 전체 교육일정 수료자에 한해 활동 시작

4 선발일정(안)

구 분	일 정
공고 및 접수	~2022.10.14.(금) 오후 2시 까지 (이메일 제출 : admin@kidc.or.kr)
서류합격자 발표	2022.10.28. (금)
적합도 검사(온라인)	2022.10.28.(금)-10.30.(일)
구비서류 제출	10.28.(금)-10.29.(토) *면접시 제출
면접	10.28.(금)-10.29.(토)
신체검사 / 신용조회	1차 만50세 미만 : 10.31.(월)~11.7.(월) 2차 만50세 이상: 10.31.(월)~11.7.(월)
신체검사 재검	11.7.(월)-11.11.(금)
국내교육대상자 발표	11.18.(금) 14:00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11.18.(금)~11.22(화)
국내교육	[공통교육] 2022. 11. 21.(월) ~ 2022. 11. 25(금) [직무교육] 2022. 11. 28(월) ~2022.12. 2(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안내

증빙서류	참 고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지원서 기재한 모든 학력 제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증빙서류 내 학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블라인드 심사 시 불이익 없음
경력 증명서	지원직종 관련 경력(무급 경력 포함) 업로드 ※ 기관발급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및 직인/날인, 경력기간,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면허증 및 자격증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업로드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대상자에 한함 ※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안내 파일 확인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붙임1]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파일 확인
봉사활동 확인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단,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병적증명서	남성 지원자에 한함

※ 경력 등 증빙서류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전

구분	유의사항
일반 파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협력기관)요청에 의해 국내교육 수료 후 원격활동 없이 협력국 활동 현장에 바로 파견되는 유형입니다. - 만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 완료자에 한함
단신부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kidc.or.kr)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일정은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kidc.or.kr)
중복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유형의 ‘코이카봉사단’ 및 ‘코이카자문단’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 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 ※ 중복지원 불가한 봉사단 유형에는 KOICA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드림봉사단, KOICA 자문단이 해당됩니다.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등 위탁형 봉사단 미포함)
선발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결과 발표 시

구분	유의사항
<p>국내교육 (온/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시점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단원은 일반(복수)여권으로 출국합니다. 국내교육 입교 시 일반여권 원본 지참 바라며, 일반여권이 없거나 단수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이전 만료자는 신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을 유념 바랍니다. ○ 교육 시작일부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
<p>백신접종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봉사단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u>파견 2주전까지 코로나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 접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u> 자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 제출 불가 및 거부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파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별도의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의 승인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표메일 : admin@kidc.or.kr
- 전 화 : 070-4916-3601, 3606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휴무), 10시~16시(점심시간 : 12~13시)

붙임 1.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

2022년 코이카해외봉사단 일반파견형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안내

※ 하기 기준 내 해당자는 지원서 제출 기간 [2022. 00. 00.(00)~ 00. 00.(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 출 서 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 출 서 류	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 출 서 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p> <p>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p> <p>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제출서류	<p>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p> <p>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p> <p>3. 가족관계증명서 1부</p>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p>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p> <p>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p>
제출서류	<p>1. 구직등록확인서</p> <p>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p>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p>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p>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p> <p>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 출 서 류	<p>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p> <p>2. 주민등록등본 1부</p>